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시행(대통령령 제24298호, 2013. 1. 9.)으로 인상된 숙박비 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출장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여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2013.12.12)에 따른 직종개편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숙박비 지급 금액 조정

-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군수)
- 당초 : 46,000원(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 변경 : 실비
 -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4급 이하)
- 당초 : 30,000원
- 변경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원, 그 밖의 지역 40,000원

○ 직종개편과 관련 변경사항 반영

- 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 전임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와 협의 후 반영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생략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성주군관용차량관리규칙」”은 “「공용차량관리규정」”, “「성주군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 그 밖의 지역 : 4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인사혁신처장**----------.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관리규정」 제4조”는 “ 성주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공용차관리규정」** 제4조”---“ **성주군공용차량관리규칙」**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7 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인사혁신처장**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 ----------.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	숙박비(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4 (생 략)

8. ----------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1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	숙박비(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 그 밖의 지역 : 4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4 (현행과 같음)